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6. 6. 27.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6월 2일

나. 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6월 9일

라. 상정일자 : 제195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(2016. 6. 21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김갑수)

가. 제안이유

- 2016. 7. 1.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면시행에 따른 주민이 주인 되는 주민자치운영을 위한 제도 마련

나. 주요내용

- 자치회관 운영주체 “민간운영자” 정의 및 책임
(안 제2조제3항, 안 제7조제8항)
- 자치회관 시설보험 가입 주체 변경 및 의무화(동장→구청장)
(안 제11조제5항)
-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수 확대 (안 제17조제1항)
(15명 이상 25명 이내 → 20명 이상 50명 이내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김기영)

- 본 개정 조례안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, 복지생태계와 마을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서울시 「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」이 2016. 7. 1. 전 등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사업 추진 취지에 부합되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,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-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한 자 및 자치회관 운영을 수탁한 자를 ‘민간운영자’로 정의하고 (안 제2조제3호), ‘민간운영자’는 자치회관 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며 (안 제7조제8항),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규정(안 제13조제3항) 하였는바, 이는 주민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여 마을공동체 형성 초기단계부터 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이며,
- 자치회관 이용자의 신체상 피해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시설보험은 가입주체를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상향 조정하고 가입을 의무화 (안 제11조제5항) 하였는바, 이는 구청장(재무과)이 일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.
- 또한,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인원을 현행 25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확대하고, 위원수를 20명부터 50명까지 범위를 넓게 하였는바(안 제17조제1항), 이는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, 동별 여건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한 것으로 보이나, 현재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과 운영실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(※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 첨부)
아울러, 여성위원의 참여를 전체위원의 40%이상으로 확대한 것은(안 제17조제3항),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1)에 규정된 ‘특정 성별 10분의 6 초과 금지 조항’을

1) 제21조(정책결정과정 참여)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(위원회, 심의회,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보임.

- 기타, 연임하는 주민자치위원 4시간 의무적 교육이수, 분과위원회 설치 등의 규정을 신설 하였으며, 입법체제나 자구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.

4. 수정안 요지

가. 수정이유

-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수를 20명부터 50명까지 범위를 넓게 하여 지역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나, 현재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현황과 운영실태를 종합 검토한 바,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수의 상한인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위원수 확대에 따른 예산 증액 편성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인원과 괴리가 있다 판단하여, 본 개정 조례안의 내용 중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수를 수정함.

나. 주요내용

- 안 제17조 제1항 중
“20명 이상 50명 이내” 를 “20명 이상 30명 이내로” 로 함.

5. 심사결과 : 수정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
----------	----

제안년월일 : 2016. 6

제출자 : 허홍석 위원 외 1인

1. 수정이유

-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수를 20명부터 50명까지 범위를 넓게 하여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나, 일부 동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의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고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, 본 개정 조례안의 내용 중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수를 수정함.

2. 주요골자

- 안 제17조 제1항 중
“20명 이상 50명 이내” 를 “20명 이상 30명 이내로” 로 함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○ 안 제17조 제1항 중

“20명 이상 50명 이내” 를 “20명 이상 30명 이내로” 로 함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수 정 안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2조(정의) 1.、2. (생략) 3. <신설>	제2조(정의) 1.、2. (현행과 같음) 3. <u>“민간운영자”란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자로서,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(주민자치위원회위원, 자원봉사자) 및 같은조 제4항에 의하여 자치회관 운영을 수탁한 자로서,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.</u>	제2조(정의) 1.、2. (현행과 같음) 3. (개정안과 같음)
제7조(운영) ① ~ ⑦ (생략) ⑧<신설>	제7조(운영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 ⑧ <u>제2항 혹은 제4항에 의하여 민간운영자가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탁한 경우, 민간운영자는 자치회</u>	제7조(운영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 ⑧ (개정안과 같음)

관 운영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.

제11조(이용 등) ① ~ ④ (생략)

⑤ 동장은 자치회관의 시설·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.

제11조(이용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시설·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.

제11조(이용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(개정안과 같음)

제13조(수당) ① ~ ② (생략)

③ <신 설>

제14조(보고) ①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주민자치의 연간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

제13조(수당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
③ 민간운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수당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
③ (개정안과 같음)

제14조(보고) ①

- - - - - 1 개 월

제14조(보고) ① (개정안과 같음)

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17조(구성 등) ① 위원은 위원장, 부위원장,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하되, 해당 지역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회 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별도로 2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.

② (생략)

③ 동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, 언론계, 문화·예술계, 관계, 경제계, 일반 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,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위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구성 등) ① 위원은 위원장, 부위원장,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50명 이내로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구성 등) ① 위원은 위원장, 부위원장,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내로 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(개정안과 같음)

원의 1/3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,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위원의 1/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~ ⑧ (생략)

⑨ <신설>

⑩ <신설>

⑪ <신설>

-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위원의 40%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~ ⑧ (현행과 같음)

⑨ 제7항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는 자는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한다.

⑩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⑪ 분과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장이 정한다.

④ ~ ⑧ (현행과 같음)

⑨ (개정안과 같음)

⑩ (개정안과 같음)

⑪ (개정안과 같음)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140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6. 6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가. 2016. 7. 1.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면시행에 따른 자치회관 운영 조례 개정
- 나.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수 개편 및 여성위원 비율 확대로 주민자치위원 구성 다양화
- 다. 주민이 주인되는 자치회관 구현을 위한 제도 마련

2. 주요내용

- 가. 자치회관 운영주체 “민간운영자” 정의 명시(조례안 제2조3항)
- 나. 자치회관 민간운영 협약에 따른 책임 명시(조례안 제7조8항)
- 다. 자치회관 시설보험 가입 주체(동장→구청장) 변경 및 의무화 명시(조례안 제11조5항)
- 라.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수 개편(기존 15명 이상 25명 이내 → 20명 이상 50명 이내, 조례안 제17조1항)
- 마. 주민자치위원 여성비율 확대(기존 1/3 → 40%, 조례안 제17조3항)
- 바.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 4시간 이상 이수한 자 연임가능(조례안 제17조9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협의사항
 - (1) 규제심사 : 심사실시(의견없음)
 - (2) 부패영향평가 : 평가실시(의견없음)
 - (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실시(의견없음)
- 라. 기 타
 - (1) 입법예고(2016.5.4.(수)~2015.5.24.(화), 20일간) 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“민간운영자”란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자로서,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(주민자치위원회위원, 자원봉사자) 및 같은조 제4항에 의하여 자치회관 운영을 수탁한 자로서,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.

제7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 제2항 혹은 제4항에 의하여 민간운영자가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탁한 경우, 민간운영자는 자치회관 운영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.

제11조제5항 중 “동장은”을 “구청장은”으로, “가입할 수 있다”를 “가입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민간운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제1항 중 “4개월”을 “1개월”로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15명 이상 25명 이하로”를 “20명 이상 50명 이내로” 한다.

제17조제3항 중 “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위원의 1/3”을 “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40%”로 한다.

제17조제9항, 제10항,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⑨ 제7항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는 자는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 교

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한다.

⑩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⑪ 분과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장이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1.、2. (생략) 3. <신설>	제2조(정의) 1.、2. (현행과 같음) <u>3. “민간운영자”란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자로서,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(주민자치위원회위원, 자원봉사자) 및 같은조 제4항에 의하여 자치회관 운영을 수탁한 자로서,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.</u>
제7조(운영) ① ~ ⑦ (생략) ⑧<신설>	제7조(운영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 <u>⑧ 제2항 혹은 제4항에 의하여 민간운영자가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탁한 경우, 민간운영자는 자치회관 운영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.</u>
제11조(이용 등) ① ~ ④ (생략) ⑤ <u>동장은 자치회관의 시설·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.</u>	제11조(이용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<u>⑤ 구청장은 자치회관의 시설·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.</u>
제13조(수당) ① ~ ② (생략) ③ <신설>	제13조(수당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민간운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u>

⑩ <신 설>

⑪ <신 설>

⑩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⑪ 분과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장이 정한다.